
**중소기업 소상공인
밀집지역 실태조사 연구**

2020. 12.

중소기업연구원

제 출 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밀집지역 실태조사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이 병 현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 상 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홍 운 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 상 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 희 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

<목 차>

1. 주요내용	1
2.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별 특성분석	2
3. 중소기업 밀집지역 기업특성 분석	42
4. 공업지역 분석	3
5. 선정지표 시뮬레이션	6
6.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제도 차별화 방안	74
7.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 및 개선방안	95

1. 주요내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현황조사 및 DB확보
 - 법령 등에 명시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지역별 기업, 업종별 분포 등 기초 현황 조사
 -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정의와 기준 개선안 제시
 -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DB 확보방안 마련

- 공업지역 현황조사 및 밀집지역 기준 제시
 - 현 공업지역 밀집지역 기준 적정성 검토 (1만제곱미터 당 3개) 및 공업지역 현황 분석

- 특별지원지역 운영 개선방안 마련
 - 밀집지역에 대한 지표별 시뮬레이션
 - 분석결과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법령·기준 개선안 마련

2.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별 특성분석

□ 국가산업단지

○ 일반현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 47개 국가산업단지에 50,396개사가 가동 중이며, 1,072,943명이 고용됨 ('20년 3분기)

○ 기초현황 분석

- 40개 국가산업단지별, 55,427개 기업 분석
- 지역별 국가산업단지 현황

시도	일반현황		분석자료	
	단지 수	비중(%)	단지 수	비중(%)
강원도	1	2.0	1	2.5
경기도	5	9.8	6	15.0
경상남도	9	17.6	5	12.5
경상북도	6	11.8	3	7.5
광주광역시	2	3.9	2	5.0
대구광역시	1	2.0	1	2.5
대전광역시	1	2.0	1	2.5
부산광역시	1	2.0	1	2.5
서울특별시	1	2.0	1	2.5
세종특별자치시	-	-	-	-
울산광역시	2	3.9	2	5.0
인천광역시	2	3.9	3	7.5
전라남도	5	9.8	4	10.0
전라북도	6	11.8	4	10.0
제주특별자치시	2	3.9	1	2.5
충청남도	5	9.8	3	7.5
충청북도	2	3.9	2	5.0
합계	51	100.0	40	100.0
수도권	8	15.7	10	25
비수도권	43	84.3	30	75

- (면적) 국가산업단지 47개의 단지당 지정면적은 $17.2km^2$ 이며 산업시설구역 또한 $6km^2$ 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음.
- * 우리나라 행정구역 중 시군구의 평균면적은 $438.4km^2$ 이며, 수도권의 경우 $179.7km^2$, 비수도권의 경우 $543.2km^2$,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73.3km^2$ 인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도시계획현황)
- * 경기도 고양시 동지역의 평균면적은 $6.9km^2$ 이며,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의 경우에는 $54km^2$ 로 나타남. 또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동지역 평균면적은 $1.9km^2$ 로 나타남.

단지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천 m^2)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천 m^2)	단지당 지정면적 (천 m^2)	단지당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천 m^2)
국가	47	806,620	285,324	17,162	6,071

- (산업분포)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등 전통적 제조업이 단지의 가장 많은 산업군을 차지하는 산업단지가 존재하는 반면,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 등 산업단지별 특성이 차별화되는 산업단지가 존재

- * 북평국가산업단지(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1.1%), 시화국가산업단지(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4.7%), 창원국가산업단지(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8.4%),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4.4%), 군산2국가산업단지(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9.4%), 광양국가산업단지(1차 금속제품 제조업: 15.4%)
- * 시화멀티테크노밸리(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6.7%), 구미국가산업단지(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1.7%), 석문국가산업단지(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30.2%)
- * 아산국가산업단지(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15.4%),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12.2%), 여수국가산업단지(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38.2%)
- * 반월국가산업단지(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제조업: 21.8%), 대덕연구개발특구(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제조업: 21.3%), 한국수출산업 (부평)국가산업단지(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제조업: 17.7%)
-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출판업: 44.1%)
- * 대구국가산업단지(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38.4%), 군산국가산업단지(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22.1%)
- *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식료품: 83.2%)
- * 오송생명과학단지(의료용물질·의약품: 43.1%)

- 분석대상 55,427개 기업의 산업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음.

산업분류	기업 수	비중(%)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0,408	18.7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8,803	15.8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961	8.95
전기장비 제조업	4,021	7.25
출판업	3,363	6.07
부동산업	3,299	5.9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969	3.5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834	3.31
1차 금속 제조업	1,790	3.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732	3.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24	2.75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43	1.88
전문 서비스업	788	1.42
섬유제품 제조업	742	1.34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2	1.32
합계	55,427	100.0

□ 일반산업단지

○ 일반현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 676개 일반산업단지에 38,619개사가 가동 중이며, 957,249명이 고용됨 ('20년 3분기)

○ 기초현황 분석

- 484개 일반산업단지별, 42,095개 기업 분석
- *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기업 수 10개 미만인 산업단지가 159개로 전체 일반산업단지의 32.8%를 차지함.
- * 일반산업단지 중 가장 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산업단지는 부산의 '부산센텀시티일반산업 단지'로 3,138개 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다음으로는 대구 성서지방산업단지(2,967개), 경기도 성남지방산업단지(2,921개) 순으로 나타남.
- * 일반산업단지의 기업수는 평균 86.8개이며, 표준편차가 269.9로 큰 것으로 나타나, 산업단지별 입주기업의 규모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임.
- * 아직 준공중인 일반산업단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수 10개 미만인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업수는 평균 127.2개이며, 표준편차는 321.7로 여전히 표준편차가 큼.
- 지역별 일반산업단지 현황
- * 일반현황 기준으로 경기도가 170개로 가장 많으며, 제주특별자치시가 1개로 일반산업단지가 가장 적고, 비수도권에 73%가 위치하고 있음.
- * 분석자료 기준으로도 경기도가 124개로 가장 많은 일반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 약 72%의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음.
- * 시군구를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안성시가 23개로 가장 많은 일반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상북도 경주시(19), 충청북도 음성군(17), 경기도 평택시(17) 순으로 나타남.

시도	일반현황		분석자료	
	단지 수	비중(%)	단지 수	비중(%)
강원도	24	3.55	15	3.09
경기도	170	25.15	124	25.57
경상남도	114	16.86	66	13.61
경상북도	72	10.65	53	10.93
광주광역시	9	1.33	5	1.03
대구광역시	16	2.37	12	2.47
대전광역시	3	0.44	5	1.03
부산광역시	30	4.44	23	4.74
서울특별시	2	0.30	3	0.62
세종특별자치시	12	1.78	10	2.06
울산광역시	22	3.25	15	3.09

인천광역시	12	1.78	11	2.27
전라남도	30	4.44	22	4.54
전라북도	22	3.25	20	4.12
제주특별자치시	1	0.15	1	0.21
충청남도	59	8.73	41	8.45
충청북도	78	11.54	59	12.16
합계	676	100.0	485	100.0
수도권	184	27.22	138	28.45
비수도권	492	72.78	347	71.55

- (면적) 일반산업단지 676개의 단지당 지정면적은 $0.8km^2$ 이며 산업시설구역 $0.5km^2$ 임.

* 일반산업단지 중 조성면적이 가장 넓은 산업단지는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일반산업단지 지정면적은 $9.5km^2$ 이며, 다음으로는 전남 여수시 울촌 제1산업단지($9.1km^2$), 대구 달성군 대구테크노폴리스($7.3km^2$)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산업단지 중 산업시설구역이 가장 넓은 산업단지는 전남 여수시 울촌제1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은 $5.9km^2$ 이며, 다음으로는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구 송산)($4.5km^2$), 광주 광산구 하남(재생사업지구)($4.5km^2$)인 것으로 나타남.

단지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천 m^2)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천 m^2)	단지당 지정면적 (천 m^2)	단지당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천 m^2)
일반	676	531,882	322,608	787	477

- (산업분포) 일반산업단지별 산업분포를 보면, 산업단지별로 산업분포가 상당히 다양함을 알 수 있음.

- 일반산업단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분류는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화학물질·화학제품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이며, 지역별로 유사한 분포를 보임.

* 경상남도의 경우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진주시, 창원시의 경우 금속가공제품 제조기업 비중이 높음

* 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화학물질·화학제품제조업의 비중이 높음.

-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특화 산업단지들을 제외하고 대체로 전통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이 분포하고 있어, 전통제조업 중심의 지원사업 구성이 필요해 보이나, 몇몇 특화 산업단지의 경우 차별화가 필요

* 동두천지방산업단지(가죽·가방·신발: 55.6%), 양주상수일반산업단지(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0.0%), 의정부부용현지방산업단지(의복·액세서리·모피: 18.3%), 파주오산지방산업단지(인쇄·기록매체 복제업: 80.0%), 평택현곡지방산업단지(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수성의료지구(출판업: 66.7%), 부산생곡지구일반산업단지(폐기물 수집·운반·처리: 47.3%), 부산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전문서비스업: 27%), 화순지방산업단지(의료용물질·의약품제조업: 84.2%), 전주제1지방산업단지(의복·액세

서리·모피: 16.8%), 천안제3지방산업단지(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관리: 18%)

- 분석대상 42,095개 기업의 산업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음.

산업분류	기업 수	비중(%)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6,982	16.59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6,275	14.9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748	6.53
전기장비 제조업	2,410	5.73
부동산업	2,390	5.6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90	5.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155	5.12
섬유제품 제조업	1,845	4.38
식료품 제조업	1,827	4.3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04	3.81
1차 금속 제조업	1,391	3.3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158	2.75
전문 서비스업	883	2.1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06	1.68
출판업	686	1.63
합계	42,095	100.0

□ 농공단지

○ 일반현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 472개 농공단지에 6,831개사가 가동 중이며, 152,971명이 고용됨 ('20년 3분기)

○ 기초현황 분석

- 448개 농공단지별, 8,967개 기업 분석
- * 농공단지의 경우 기업 수 10개 미만인 산업단지가 145개로 전체 농공단지의 32.4%를 차지함.
- * 농공단지 중 가장 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단지는 전라남도의 '목포산정농공단지'로 162개 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다음으로는 강원도 춘천퇴계농공단지(155개), 충청남도 천안백석농공 단지(148개) 순으로 나타남.
- * 농공단지의 기업수는 평균 20개이며, 표준편차는 19.7로 나타나, 일반산업단지 보다는 입주기업 수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 기업수 10개 미만인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업수는 평균 27.4개이며, 표준편차는 20.1로 나타남.

- 지역별 농공단지 현황

- * 일반현황 기준으로 충청남도가 92개로 가장 많으며, 대전, 서울, 인천은 농공단지가 없음. 또한, 경기도 1개를 제외한 모든 농공단지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
- * 분석자료 기준으로도 충청남도가 87개로 가장 많은 농공단지를 보유하고 있음.
- * 시군구를 기준으로 보면 충청남도 공주시가 11개로 가장 많은 농공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상남도 함안군(10개), 충청남도 아산시(9), 충청북도 진천군(9) 순으로 나타남.

시도	일반현황		분석자료	
	단지 수	비중(%)	단지 수	비중(%)
강원도	44	9.32	43	9.60
경기도	1	0.21	1	0.22
경상남도	81	17.16	78	17.41
경상북도	69	14.62	67	14.96
광주광역시	1	0.21	1	0.22
대구광역시	2	0.42	2	0.45
대전광역시	-	-	-	-
부산광역시	1	0.21	1	0.22
서울특별시	-	-	-	-
세종특별자치시	4	0.85	4	0.89
울산광역시	4	0.85	4	0.89
인천광역시	-	-	-	-
전라남도	68	14.41	57	12.72
전라북도	59	12.50	56	12.50
제주특별자치시	3	0.64	3	0.67
충청남도	92	19.49	87	19.42
충청북도	43	9.11	44	9.82
합계	472	100.0	448	100.0
수도권	1	0.21	1	0.22
비수도권	471	99.79	447	99.78

- (면적) 농공단지 472개의 단지당 지정면적은 $0.16km^2$ 이며 산업시설구역 또한 $0.16km^2$ 임.
- * 농공단지 중 지정면적이 가장 넓은 농공단지는 충남 서산시 성연농공단지(지정면적은 $0.78km^2$)이며, 다음으로는 경남 사천시 사남농공단지($0.57km^2$), 경북 김천시 대광농공단지($0.56km^2$)인 것으로 나타남.
- * 농공단지 중 산업시설구역이 가장 넓은 산업단지는 충남 서산시 성연농공단지(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0.60km^2$)이며, 다음으로는 전남 곡성군 입면농공단지($0.50km^2$), 경남 사천시 사남농공단지($0.48km^2$)인 것으로 나타남.

단지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천 m^2)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천 m^2)	단지당 지정면적 (천 m^2)	단지당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천 m^2)
농공	472	76,716	76,223	163	161

- (산업분포) 농공단지별 산업분포를 보면, 대체로 식료품 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 분야 기업이 농공단지에도 다수 입주해 있는 농공단지도 존재
-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제품 제조업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으며, 경상남도 고성군의 경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음.
- 또한, 경상남도 김해시의 농공단지의 경우 농공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 전통적 제조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지역의 경우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분포별 구분은 모호
- 분석대상 8,967개 기업의 산업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음.

산업분류	기업 수	비중(%)
식료품 제조업	1,375	15.33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238	13.81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846	9.43
전기장비 제조업	673	7.5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62	7.3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75	6.4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06	5.64
섬유제품 제조업	502	5.6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474	5.5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5	3.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14	2.39
부동산업	205	2.2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99	2.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93	2.15
1차 금속 제조업	185	2.06
합계	8,967	100.0

□ 도시첨단산업단지

○ 일반현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 30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811개사가 가동 중이며, 15,796명이 고용됨 ('20년 3분기)
- 2013년 이후 입지요건 완화를 통해 신도시 및 수도권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지방 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됨.

○ 기초현황 분석

- 16개 도시첨단산업단지별, 826개 기업 분석
-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기업 수 10개 미만인 산업단지가 8개로 전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50%를

차지함.

- *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가장 기업규모가 큰 산업단지는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이며, 산업단지별 평균 51.6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표준편차는 67.9로 큰 편임.
- * 기업 수 10개 미만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제외할 경우 산업단지별 평균 98.4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표준편차는 69.7로 나타남.

– 지역별 도시첨단산업단지 현황

- * 일반현황 기준으로 경기도가 8개로 가장 많으며, 강원도, 부산광역시가 4개임.
- * 경상북도, 대전, 서울, 울산, 제주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없으며, 33%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음.
- * 분석자료 기준으로는 부산광역시가 4개로 가장 많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음.
- * 시군구를 기준으로 보면 복수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존재하는 시군구 없음.

시도	일반현황		분석자료	
	단지 수	비중(%)	단지 수	비중(%)
강원도	4	13.33	1	6.25
경기도	8	26.67	3	18.75
경상남도	1	3.33	1	6.25
경상북도	-	-	-	-
광주광역시	1	3.33	-	-
대구광역시	2	6.67	1	6.25
대전광역시	-	-	-	-
부산광역시	4	13.33	4	25.00
서울특별시	-	-	-	-
세종특별자치시	1	3.33	1	6.25
울산광역시	-	-	-	-
인천광역시	2	6.67	1	6.25
전라남도	1	3.33	-	-
전라북도	1	3.33	1	6.25
제주특별자치시	-	-	-	-
충청남도	3	10.00	1	6.25
충청북도	2	6.67	2	12.50
합계	30	100.0	16	100.0
수도권	10	33.33	4	25.00
비수도권	20	66.67	12	75.00

– (면적) 도시첨단산업단지 30개의 단지당 지정면적은 $0.28km^2$ 이며 산업시설구역 또한 $0.28km^2$ 임.

- *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지정면적이 가장 넓은 단지는 현재 조성중인 충남 홍성군 내포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면적은 $1.3km^2$ 이며, 다음으로는 인천 서구 IHP(인천경제자유구역)($1.2km^2$),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4-2생활권($0.9km^2$)인 것으로 나타남.
- *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산업시설구역이 가장 넓은 산업단지도 충남 홍성군 내포도시첨단산업 단지 산업시설구역 면적은 $0.65km^2$ 이며, 다음으로는 인천 서구 IHP(인천경제자유구역) ($0.65km^2$),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4-2생활권($0.52km^2$)인 것으로 나타남.

단지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천 m^2)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천 m^2)	단지당 지정면적 (천 m^2)	단지당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천 m^2)
도시첨단	30	8,297	8,291	277	276

- (산업분포) 도시첨단산업단지별 산업분포를 보면, 대체로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입주 기업 수 10개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8개 중 5개 단지에서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창조경제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는 출판업의 비중이 40%로 나타남.
-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다음으로는 전문 서비스업, 출판업, 전기장비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대상 826개 기업의 산업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음.

산업분류	기업 수	비중(%)
출판업	132	15.9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8	11.8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5	9.08
전기장비 제조업	68	8.23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64	7.75
연구개발업	61	7.38
부동산업	51	6.17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4	5.33
전문 서비스업	41	4.9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3	4.00
정보서비스업	26	3.15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	3.0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1	2.5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8	2.18
사업 지원 서비스업	17	2.06
합계	826	100.0

□ 지식산업센터

○ 일반현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 1989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안에 아파트형공장을 최초 건립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 변경

- 전국적으로 1,201개 센터가 지정되었으며, 공장설립이 승인된 센터가 412개, 공장설립이 완료되어 등록된 센터가 789개임.
-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도 시행령 기준 충족시 지식산업센터로 신청 가능
- 개별입지가 717개이며,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센터가 305개, 도시첨단산업단지 16개, 외국인 전용단지 1개, 자유무역지역 5개, 지방산업단지 157개임.

○ 기초현황 분석

- 701개 지식산업센터별, 38,959개 기업 분석
 -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수는 평균 55.6개이며, 표준편차는 87.8개로 나타남.
 - * 입주 기업수 10개 미만인 지식산업센터는 287개이며, 전체의 41%를 차지함.
 - * 이는 아직 공장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지식산업센터가 1,201개 중 412개 약 34%를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 기업수 10개 미만인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할 경우 입주기업 수는 평균 91.6개이며, 표준편차는 99.5개로 나타남.
-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현황
 - * 일반현황 기준으로 경기도에 527개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해 있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369개), 인천(75개) 순으로 수도권에 81%가 밀집해 있음.
 - * 분석자료 기준으로도 경기도에 가장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수도권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비중이 82% 달하여,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 분석자료 기준으로 시군구별로는 서울 금천구에 109개, 구로구에 46개, 경기도 시흥시 38개, 성남시 중원구 35개 등으로 위치해 있음.
 - * 일반현황 기준으로도 서울 금천구에 가장 많은 147개가 밀집해 있음.

시도	일반현황		분석자료	
	단지 수	비중 (%)	단지 수	비중 (%)
강원도	13	1.08	5	0.71
경기도	527	43.88	275	39.23
경상남도	25	2.08	24	3.42
경상북도	10	0.83	7	1.00
광주광역시	21	1.75	9	1.28
대구광역시	32	2.66	20	2.85
대전광역시	15	1.25	6	0.86
부산광역시	46	3.83	34	4.85
서울특별시	369	30.72	247	35.24
세종특별자치시	1	0.08	1	0.14
울산광역시	6	0.50	1	0.14
인천광역시	75	6.24	54	7.70

전라남도	18	1.50	6	0.86
전라북도	14	1.17	4	0.57
제주특별자치도	4	0.33	1	0.14
충청남도	7	0.58	4	0.57
충청북도	18	1.50	3	0.43
합계	1,201	100.0	701	100.0
수도권	971	80.85	576	82.17
비수도권	230	19.15	125	17.83

- (면적) 1,201개 지식산업센터를 분석한 결과, 센터의 평균 용지면적은 $8,124m^2$ 이며, 건축면적은 $36,788m^2$ 인 것으로 나타남. 지식산업센터에 따라 개별 건물이 하나의 지식산업센터인 경우도 있으며, 몇 개의 건물을 묶어 지식산업센터로 지정한 경우도 존재
 - * 용지면적이 확정된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용지면적이 가장 큰 지식산업센터는 서울 성동구 ‘백영성수센터’로 용지면적은 $234,210m^2(0.2km^2)$ 이며, 다음으로 국가산업단지 내에 존재하는 경기도 시흥시 ‘트윈지식산업센터’(165,344 m^2), 경기도 김포시 ‘원정 주식회사’(122,853 m^2) 순임.
 - * 용지면적이 가장 적은 지식산업센터는 국가산업단지내에 존재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대우테크노피아’로 용지면적이 14.8 m^2 로 나타나나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미착공 상태임.
 - * 건축면적이 확정된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건축면적이 가장 큰 지식산업센터는 경기도 남양주시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식산업센터’로 건축면적은 331,602 $m^2(0.3km^2)$ 이며, 다음으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330,282 m^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비알씨스마트 밸리지식산업센터’(291,184 m^2) 순임.
- (산업분포)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산업분포를 보면 대체로 ‘전자부품, 컴퓨터,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출판업, 전문 서비스업 등 지식산업 등도 다수 입주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만, 지식산업외에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도 상당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준산업분류 상 부동산업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자문 및 감정 평가업을 포괄하나, 부동산업이 가장 많은 산업분포를 차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실제 지식산업센터 목적에 맞춰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수 있음.
- 대체로 대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식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며, 도심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광역시외 도지역의 경우에는 전통제조업과 첨단제조업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역별로 산업분포의 차이가 일부 발견됨.
-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자부품, 컴퓨터,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등 첨단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성남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출판업', '부동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등 서비스업의 비중도 높음.

- 수도권 이외 도지역에서는 첨단제조업과 전통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과 부산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출판업 등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서울의 금천구의 경우에는 첨단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분포가 고른 편임.
- 분석대상 38,959개 기업의 산업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음.

산업분류	기업 수	비중(%)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818	12.37
전기장비 제조업	4,541	11.6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178	10.72
부동산업	3,813	9.79
출판업	3,279	8.42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74	7.38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201	5.65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44	4.22
전문 서비스업	1,136	2.92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102	2.8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35	2.4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816	2.09
기타 제품 제조업	783	2.01
식료품 제조업	744	1.9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01	1.80
합계	38,959	100.0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일반현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
- 총 26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광역시 및 특별시에 42%가 위치 (중기부 고시 제2018-33호)
- 지정신청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지정권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임.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 해당 지역의 벤처기업 수가 중소기업 수의 10% 이상이어야 하고, (2)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어야 하며, (3)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함(동법 시행령 제11조의 12).

○ 기초현황 분석

- 26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별, 3,993개 기업 분석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자료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산업분류 등이 제시되지 않아 산업분포 분석 및 매출변화 등 SIMS와 연계한 추가적인 분석 불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수는 평균 153.6개이며, 표준편차는 195.6으로 나타남.

- 지역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현황

* 수도권에 약 35%가 위치해 있음.

시도	일반현황		분석자료	
	단지 수	비중(%)	단지 수	비중(%)
강원도	2	7.69	2	7.69
경기도	5	19.23	5	19.23
경상남도	1	3.85	1	3.85
경상북도	2	7.69	2	7.69
광주광역시	2	7.69	2	7.69
대구광역시	1	3.85	1	3.85
대전광역시	1	3.85	1	3.85
부산광역시	2	7.69	2	7.69
서울특별시	3	11.54	3	11.54
세종특별자치시	-	-	-	-
울산광역시	1	3.85	1	3.85
인천광역시	1	3.85	1	3.85
전라남도	1	3.85	1	3.85
전라북도	1	3.85	1	3.85
제주특별자치시	1	3.85	1	3.85
충청남도	1	3.85	1	3.85
충청북도	1	3.85	1	3.85
합계	26	100.0	26	100.0
수도권	9	34.62	9	34.62
비수도권	17	65.38	17	65.38

- (면적)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전체 지정면적은 81.24km²이며, 평균 지정면적은 3.1km², 표준편차는 5.0km²임.

* 가장 면적이 넓은 지구는 대전광역시 대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면적은 26.83km²에 달함.

가장 적은 지구는 강원도 원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면적은 0.34km²에 불과함.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일반현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

- 총 16개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사업자는 모두 대학으로, 대학부지내 조성되어 있음.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 중인 교지나 부지를 창업자와 벤처기업 등의 사업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 기초현황 분석

- 16개 신기술창업집적지역별, 519개 기업 분석

-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기업 수는 평균 32.4개이며, 표준편차는 69.1로 편차가 큰 편임.
- * 입주 기업수 10개 미만인 집적지역은 5개이며, 전체의 31.3%를 차지
- * 기업수 10개 미만인 집적지역을 제외할 경우 입주기업 수는 평균 46.5개이며, 표준편차는 80.4로 나타남.

- 지역별 신기술창업집적지역 현황

- * 시도별 신기술창업집적지역 현황은 일반현황과 분석자료 현황이 동일
-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대체로 수도권, 광역시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 도지역에 위치한 집적시설은 6개에 불과
- * 시군구별로는 대전 유성구(한밭대, 한남대, 카이스트, 배제대)에 가장 많은 4개의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이 위치해 있음.

시도	일반현황		분석자료	
	단지 수	비중(%)	단지 수	비중(%)
강원도	1	6.25	1	6.25
경기도	3	18.75	3	18.75
경상남도				
경상북도	1	6.25	1	6.25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4	25.00	4	25.00
부산광역시	1	6.25	1	6.25
서울특별시	1	6.25	1	6.25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1	6.25	1	6.25
전라남도				
전라북도	2	12.50	2	12.50
제주특별자치시				
충청남도	1	6.25	1	6.25
충청북도	1	6.25	1	6.25
합계	16	100.0	16	100.0
수도권	5	31.25	5	31.25
비수도권	11	68.75	11	68.75

- (면적)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에 지정할 수 있으며, 최소 지정면적이 3천 m^2 를 초과해야 함.

- * 16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평균 지정면적은 19,126 m^2 이며, 가장 규모가 큰 지역은 경북 칠곡군에

영진전문대에 위치한 '산학융합벤처밸리'로 50,332 m^2 (0.05 km^2)이며, 가장 규모가 작은 지역은 경기도 시흥시 한국산업기술대에 위치한 '경기산학융합지구'로 3,647 m^2 으로 나타남.

- (산업분포) 각 신기술창업집적지역별로 차이는 존재하나, 대체로 전통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 또는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분포를 보이고 있음.

* SIMS 연계 자료 분석 결과임.

* 특히, 출판업, 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업 비중이 높음.

- 분석대상 331개 기업의 산업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음.

산업분류	기업 수	비중(%)
출판업	37	11.18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32	9.67
도매 및 상품 중개업	30	9.06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7	8.1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6.95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2	6.6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1	6.34
전기장비 제조업	20	6.04
연구개발업	20	6.04
기타 제품 제조업	10	3.02
전문직별 공사업	9	2.72
식료품 제조업	6	1.8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	1.81
합계	331	100.0

□ 벤처기업집적시설

○ 일반현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

- 벤처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입주시켜 벤처기업의 영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 건축물임.

- 집적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600 m^2 이상인 건축물 중 (1) 4개 이상(비수도권은 3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고, (2) 건축물연면적(전용면적)의 70% (비수도권은 50%) 이상이 벤처기업, 지식기반 또는 정보통신 기업이 입주하고, (3) 나머지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법에서 정하는 시설이 사용해야 함.

- 2017년 7월 기준 98개이며, 경기도가 54개로 전국 최다임.

○ 기초현황 분석

- 98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별, 2,488개 기업 분석

* 벤처기업집적시설 자료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산업분류 등이 제시되지 않아 산업분포 분석 및 매출변화 등 SIMS와 연계한 추가적인 분석 불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수는 평균 25.4개이며, 표준편차는 30.2로 나타남.

* 입주 기업수 10개 미만인 집적시설은 30개 이며, 전체의 31%를 차지

* 기업수 10개 미만인 집적시설을 제외할 경우 입주기업 수는 평균 34.1개이며, 표준편차는 32.7로 나타남.

- 지역별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

* 시도별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은 분석대상 자료를 통한 분류 결과만 제시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65%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경기도에 가장 많은 51개 시설이 밀집해 있음. 또한 대부분의 시설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 위치

* 이는 벤처기업의 경우 판로 및 인력 등의 문제로 대체로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에 위치해 있어, 대도시 이외의 도지역의 경우 해당 시설을 집적시설 만한 벤처기업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17개 시설이 있으며, 시흥시에 12개, 강남구에 5개가 존재

시도	분석자료	
	단지 수	비중(%)
강원도	2	2.04
경기도	51	52.04
경상남도	-	-
경상북도	6	6.12
광주광역시	1	1.02
대구광역시	6	6.12
대전광역시	6	6.12
부산광역시	6	6.12
서울특별시	11	11.22
세종특별자치시	-	-
울산광역시	1	1.02
인천광역시	2	2.04
전라남도	-	-
전라북도	2	2.04
제주특별자치시	1	1.02
충청남도	2	2.04
충청북도	1	1.02
합계	98	100.0
수도권	64	65.31
비수도권	34	34.69

- (면적)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지역이 아닌 벤처기업들이 집적해 있는 건축물을 지정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타 밀집지역과 달리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

- * 경기도(경기데이터드림)의 54개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을 보면, 평균 지정면적은 16,158 m^2 으로 나타나며, 가장 규모가 큰 집적시설은 성남시 판교이노밸리로 61,106 m^2 (0.06 km^2)이며, 가장 작은 집적시설은 남양주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로 1,086 m^2 에 불과함.

□ 지역특화발전특구¹⁾

○ 일반현황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경우 특구가 모든 밀집지역 대상은 아니나 특구규모를 고려할 때, 모든 특구가 밀집지역 대상으로 볼 수 있음.
-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또는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만 제곱미터 당 3개 이상 밀집된 특구의 경우 밀집지역으로 지정
- '20년 10월 기준, 195개 지정

○ 기초현황 분석

- 129개 지역특화발전특구별, 5,554개 기업 분석
- *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기업(특구사업자)은 평균 43.1개이며, 표준편차는 108.4로 편차가 큼,
- * 기업 수 10개 미만인 특구는 총 56개이며, 전체의 43.4%를 차지
- * 기업 수 10개 미만인 특구를 제외할 경우 특구 내 기업은 평균 72.7개이며, 표준편차는 137.3임.
- 지역별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
-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 80% 이상이 존재함. 이는 특구 도입 목적인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과 같음. 주로 특성이 존재하는 지역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음.
- * 전라남도에 가장 많은 36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경상북도(28개), 경기도(19개) 순임.

시도	일반현황		분석자료	
	단지 수	비중(%)	단지 수	비중(%)
강원도	14	7.18	10	7.75
경기도	19	9.74	8	6.20
경상남도	15	7.69	8	6.20
경상북도	28	14.36	18	13.95
광주광역시	3	1.54	1	0.78
대구광역시	4	2.05	3	2.33
대전광역시	1	0.51	1	0.78
부산광역시	7	3.59	7	5.43

1) 공업지역의 경우 취합된 자료가 일부지역만을 포괄하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음. 경상남도 58개, 경상북도 15개 등 대부분 차지 (70%)

서울특별시	13	6.67	8	6.20
세종특별자치시	-	-	-	-
울산광역시	2	1.03	2	1.55
인천광역시	3	1.54	3	2.33
전라남도	36	18.46	22	17.05
전라북도	14	7.18	11	8.53
제주특별자치시	3	1.54	3	2.33
충청남도	18	9.23	13	10.08
충청북도	15	7.69	11	8.53
합계	195	100.0	129	100.0
수도권	35	17.95	19	14.73
비수도권	160	82.05	110	85.27

- (면적) 면적확인이 가능한 182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면적을 보면, 평균 $3.8km^2$ 인 것으로 나타남.

* 지정면적이 가장 넓은 특구로는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로 그 면적은 $64.98km^2$ 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 5도2촌알밤특구'($63.8km^2$), 경기도 여주시 '여주 쌀산업특구'($60.8km^2$) 순으로 나타남.

* 지정면적이 가장 적은 특구로는 서울시 관악구 '관악 Edu-Valley교육특구'로 그 면적은 $38,223m^2$ ($0.04km^2$)임.

- (산업분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경우에는 각 유형별로 산업분포에 차이가 있음.

* 향토자원 관련 특구의 경우에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농업 등이 주로 분포해 있음.

* 산업·연구 관련 특구는 연관된 산업 중심으로 기업이 분포해 있음. 예를 들어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 특구와 대구 안경산업특구는 '의료, 정밀기기,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관련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으며, 대구 패션주얼리특구는 소분류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을 포괄하는 '기타 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음.

- 분석대상 1,605개 기업의 산업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음.

산업분류	기업 수	비중(%)
식료품 제조업	261	16.2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89	11.78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55	9.66
소매업	81	5.05
농업	74	4.6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66	4.11
음료 제조업	56	3.4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5	3.43
전기장비 제조업	50	3.12
교육 서비스업	45	2.8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2	2.62
전문직별 공사업	34	2.12

보건업	32	1.99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1	1.93
기타 제품 제조업	29	1.81
합계	1605	100.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일반현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 '18년 기준 전통시장 수는 1,437개이며, 전체점포수는 205,271개임. (실태조사 결과)
- '18년 기준 전국의 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수는 257개이며, 점포수는 62,253개임. (실태조사 결과)
- * 미인정 상점가의 경우 훨씬 많은 분포를 보임.

○ 활용가능 자료

- 전통시장, 상점가의 경우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에 대해서는 현황과악*이 가능하나, 해당 밀집지역 내 소상공인 현황은 파악이 불가
- * 매년 조사되는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를 통해 가능
- 해당 밀집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현황과악을 위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관련 쟁점

- 매년 실태조사(40,000개의 샘플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얻은 값으로 전통시장의 매출 규모와 시장별 매출 규모를 추정
- 전통시장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미인정상점가 (20~30개 이상의 소상공인들의 밀집지역)가 많이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움.
- * 골목형상점가로 볼 수 있음.
- 전통시장의 경우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등 현재 다양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통시장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기존 지원과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 * 정책자금 금리 인하, 상환기간 유예, 한도 조정, 세금 감면 등

○ 매출액 파악 방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록, 인정시장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정확한 매출규모는 아니나, 카드사의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통해 일부

확인 가능

- 카드사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신용카드 시장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는 신한카드의 매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안 가능
- 그러나, 현금거래량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매출로 집계한 자료를 정확한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국세청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각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서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

□ 골목형상점가

○ 일반현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
-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 특화거리 등 기존 '전통시장'지원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기 위해 지정
 - * 독섬역상점가, 동부골목시장, 영월종합상가,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도선동상점가 등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대상임.

○ 활용가능 자료

- 조례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현황은 모두 파악이 가능*, 다만, 골목형상점가별로 소상공인 현황 파악은 불가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에서 해당 자료를 관리
- 해당 밀집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

□ 상권활성화구역

○ 일반현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 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의 실태조사 결과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해서 감소하는 곳에 지정

- 선정된 지역은 '상권르네상스'사업으로 지원하며, 현재 20곳의 상권이 지정되어 지원되고 있음.

○ 활용가능 자료

- 상권르네상스 사업 신청 시 해당 지자체에서 구역경계도를 제출하기 때문에 대상 범위 파악*은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시장관리팀에서 관리하나 신청 리스트와 선정리스트에 대한 정보만 확보하고 있음.

- 다만, 구역 내 소상공인 현황은 파악이 안되며, 소상공인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

-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구역에 대한 현황조사나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현재 지정된 모든 상권르네상스 지원대상이 동일한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며,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확인이 필요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관련 쟁점

- 상권활성화구역은 그 자체로 현재 경기가 좋지 않은 상권을 지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과 중복가능성 존재

-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등 상권환경개선사업과 홍보·마케팅 등 상권활성화 사업이 지원됨.

- 따라서,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경우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는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

□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 일반현황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도시형소공인: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기준 중분류 25개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

[집적지 기준]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 50인

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 40인

3. 군(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관할구역의 읍·면 : 20인

- '20년 기준 총 35개 지정

*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근거하면, 1,531개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대상지 존재

○ 활용가능 자료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선정은 중기부에서 담당하고, 선정된 집적지구 리스트를 소진공 담당부서*에 통보, 해당 집적지구에 대해서 소진공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프로세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지정된 집적지구와 관련된 자료는 소진공에서 중기부와 같이 보유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청 시, 해당지자체가 집적지구 범위(구역경계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읍/면/동까지만 표기되어 있는 상황임.

-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구역 내 소공인 사업체수, 종사자 수, 업종 등은 파악이 가능하나, 구역 내 소공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현황 파악은 불가

- 해당 지자체에서 구역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의 소공인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실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 밀집지역에 대한 정보활용 가능성

○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시장/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해당 년도 사업추진계획, 사업내용, 사업실적 및 성과, 실태조사 등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자료는 활용 가능

- 다만, 중기부 담당과와 협의 필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전통시장육성과

* 골목형상점가 : 전통시장육성과

* 상권활성화구역 : 지역상권과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 지역상권과

-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모두 자료 활용 가능

- (골목형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특화시장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 확보 가능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스마트공방,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공동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백년소공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 소공인 판로지원사업,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소공인 판매촉진 지원사업 등 지원사업 존재

3. 중소기업 밀집지역 기업특성 분석

[분석개요]

- 밀집지역 기업현황자료와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SIMS)를 연계한 자료 분석
 - 매칭 결과에는 중복기업 (여러 밀집지역에 포함된 기업), 대기업 등 제외한 결과임.

밀집지역 유형	기업현황 자료		매칭 결과	
	밀집지역 수	기업 수	밀집지역 수	기업 수
국가산업단지	40	55,427	38	31,841
일반산업단지	484	42,095	472	28,344
농공산업단지	448	8,967	444	6,025
도시첨단산업단지	16	826	15	553
벤처육성지구	38	3,993	-	-
벤처기업집적시설	98	2,488	-	-
신기술창업	17	519	15	381
지식산업센터	701	38,959	675	23,836
공업지역	105	10,250	-	-
지역특화발전특구	129	5,554	97	1,636
합계	2,076	169,078	1,756	92,616

□ 기초통계량 (92,616개 기업) 분석결과

- 전체와 각 밀집지역 유형별 매출액, 수출액, 당기순이익금, 피보험자수는 다음과 같음.
 - 단위: 매출액·당기순이익(백만원), 수출액(천달러), 피보험자수(명)
 - 전체기업 (92,616개 기업)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매출액 2019	74,635	6,457	13,484	0	148,324
매출액 2018	74,706	6,367	13,329	0.2	193,930
매출액 2017	73,157	6,384	13,960	0	678,199
수출액 2019	23,738	2,384	7,313	0	160,928
수출액 2018	23,721	2,501	8,421	0	258,700
수출액 2017	23,077	2,414	9,273	0	523,936
당기순이익 2019	41,737	228	2,987	-107,149	87,446
당기순이익 2018	56,048	226	2,348	-77,990	65,267
당기순이익 2017	57,041	245	3,008	-84,214	435,658
피보험자수 2019	79,090	19.2	41.0	0	2,340
피보험자수 2018	78,596	19.4	40.5	0	2,360
피보험자수 2017	77,351	19.5	39.1	0	1,327

- 국가산업단지 (31,841개 기업)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매출액 2019	26,079	6,274	13,394	0	147,108
매출액 2018	26,046	6,219	13,065	0.3	193,930
매출액 2017	25,425	6,273	13,649	0	570,821
수출액 2019	7,832	2,551	7,522	0	146,910
수출액 2018	7,783	2,671	8,799	0	258,700
수출액 2017	7,522	2,577	8,263	0	196,973
당기순이익 2019	13,835	246	2,994	-89,695	66,027
당기순이익 2018	19,112	240	2,225	-65,978	65,267
당기순이익 2017	19,616	253	2,223	-84,214	74,209
피보험자수 2019	27,418	18.8	41.3	0	2,340
피보험자수 2018	27,178	19.1	41.0	0	2,360
피보험자수 2017	26,556	19.4	38.6	0	877

- 농공단지 (6,025개 기업)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매출액 2019	4,718	7,085	14,652	0.2	145,442
매출액 2018	4,697	6,999	14,803	0.9	181,396
매출액 2017	4,609	6,999	15,050	0.1	294,890
수출액 2019	1,187	2,763	9,677	0	155,242
수출액 2018	1,144	2,916	9,749	0	126,751
수출액 2017	1,129	2,764	10,049	0	220,506
당기순이익 2019	3,043	191	2,268	-57,378	23,462
당기순이익 2018	3,804	188	1,962	-50,874	34,629
당기순이익 2017	3,786	191	1,737	-49,647	14,390
피보험자수 2019	5,221	18.6	37.5	0	1,059
피보험자수 2018	5,174	19.0	37.4	0	847
피보험자수 2017	5,066	19.2	37.2	0	789

- 도시첨단산업단지 (553개 기업)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매출액 2019	481	7,048	15,322	0	99,144
매출액 2018	466	6,944	14,955	0.7	97,868
매출액 2017	441	6,902	14,800	0.1	133,533
수출액 2019	158	4,147	10,946	0	61,627
수출액 2018	151	4,286	11,393	0	66,205
수출액 2017	134	4,050	9,273	0	48,358
당기순이익 2019	356	8	3,698	-40,965	19,956
당기순이익 2018	417	259	2,414	-14,669	24,076
당기순이익 2017	392	177	2,162	-22,642	12,881

피보험자수 2019	503	25.1	45.4	0	314
피보험자수 2018	488	24.5	43.9	0	332
피보험자수 2017	453	25.3	44.8	0	320

- 신기술창업 (381개 기업)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매출액 2019	331	1,290	3,152	0.6	22,113
매출액 2018	310	1,232	2,994	1	19,680
매출액 2017	251	1,440	3,724	1	27,394
수출액 2019	76	516	1,324	0	9,066
수출액 2018	71	627	1,911	0	11,681
수출액 2017	60	701	2,303	0	14,588
당기순이익 2019	189	-414	2,276	-25,738	2,581
당기순이익 2018	232	-154	1,260	-11,631	3,349
당기순이익 2017	201	-143	2,658	-34,789	9,847
피보험자수 2019	339	7.3	13.7	0	134
피보험자수 2018	305	7.3	13.7	0	140
피보험자수 2017	241	8.0	16.7	0	153

- 일반산업단지 (28,344개 기업)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매출액 2019	23,548	8,265	15,461	0	148,324
매출액 2018	23,568	8,167	15,388	0.2	193,930
매출액 2017	23,081	8,142	16,402	0.4	678,199
수출액 2019	8,007	2,986	8,303	0	160,928
수출액 2018	7,969	3,146	9,303	0	237,163
수출액 2017	7,758	3,060	11,939	0	523,936
당기순이익 2019	13,500	276	3,278	-89,695	87,446
당기순이익 2018	17,818	262	2,722	-77,990	61,661
당기순이익 2017	17,829	298	4,409	-84,214	435,658
피보험자수 2019	25,178	23.0	44.0	0	1,274
피보험자수 2018	24,959	23.2	44.1	0	1,326
피보험자수 2017	24,598	23.3	43.1	0	1,327

- 지식산업센터 (23,836개 기업)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매출액 2019	18,105	4,480	9,918	0	140,206
매출액 2018	18,212	4,367	9,850	0.3	193,930
매출액 2017	18,000	4,402	10,161	0	356,019
수출액 2019	6,169	1,353	4,557	0	79,232
수출액 2018	6,293	1,442	6,246	0	187,840
수출액 2017	6,178	1,381	6,030	0	260,419

당기순이익 2019	10,269	166	2,790	-107,149	48,097
당기순이익 2018	13,922	175	2,128	-53,125	65,267
당기순이익 2017	14,471	188	1,966	-36,940	92,764
피보험자수 2019	19,243	15.4	37.3	0	1,373
피보험자수 2018	19,312	15.3	35.5	0	1,190
피보험자수 2017	19,303	15.2	34.3	0	1,072

- 지역특화발전특구 (1,636개 기업)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매출액 2019	1,373	3,872	11,620	1	125,009
매출액 2018	1,407	3,649	11,103	0.2	146,182
매출액 2017	1,350	3,506	10,445	0.3	107,344
수출액 2019	309	1,214	4,148	0	38,537
수출액 2018	310	1,157	3,601	0	34,261
수출액 2017	296	1,166	3,626	0	28,523
당기순이익 2019	545	296	1,811	-10,863	17,106
당기순이익 2018	743	263	1,550	-10,866	14,408
당기순이익 2017	746	243	1,574	-9,526	19,516
피보험자수 2019	1,188	16.0	37.6	0	408
피보험자수 2018	1,180	16.1	36.3	0	387
피보험자수 2017	1,134	15.6	34.2	0	346

○ 기초통계량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전체기업의 2019년 매출액 평균은 65억으로 나타나며, 수출액은 24십만달러, 당기순이익은 2.3억원, 피보험자수는 18.7명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특성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속한 기업들의 2019년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부분이 특징적임.
- 지식산업센터,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 산업단지에 속한 기업들보다 평균매출액, 수출액이 절반수준으로 나타나, 산업단지에 속한 중소기업들의 경영현황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경우에는 2019년 평균 매출액이 13억원 수준이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로 밀집지역 유형 중 가장 경영현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식산업센터와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들의 경우 매출액이나 수출액의 규모는 산업단지에 속한 기업들보다 적으나 당기순이익은 유사하거나 약간 적게 나타남.

□ 중소기업 밀집지역별 매출액 증가율 분석결과

- 대기업 등을 제외한 자료 중 2017, 2019년 매출액 변화 확인이 가능한 즉, 2017, 2019년 매출액이 0이 아닌 밀집지역별 기업수는 다음과 같음.

- 92,616개 기업 중 2017, 2019년 매출액이 모두 존재하는 기업은 70,786개임.

밀집지역 유형	기업 수		
	전체 기업 수	SIMS 매칭 기업 수 (기초통계량)	매출액 증가율 산정가능 기업 수
국가산업단지	55,427	31,841	24,732
일반산업단지	42,095	28,344	22,388
농공산업단지	8,967	6,025	4,443
도시첨단산업단지	826	553	429
신기술창업	519	381	241
지식산업센터	38,959	23,836	17,284
지역특화발전특구	5,554	1,636	1,269
합계	152,347	92,616	70,786

- 매출액 증가율 계산 방법상 차이 비교

- 밀집지역의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1) 밀집지역 내 기업별 매출액 증가율의 평균과 (2) 밀집지역 내 기업평균 매출액의 증가율 두가지 활용이 가능
- 「고시」 상에서는 (2) 밀집지역 내 기업평균 매출액의 증가율을 활용
- * 이 경우 밀집지역 내 기업전체 매출액 합의 증가율과 같음.

- 기업별 매출액 증가율 평균 분석결과 (전체)

- 70,786개 기업에 대한 매출액 증가율 분석결과를 보면 기업평균 증가율은 154.9%이며, 최솟값은 -99.9% 감소, 최댓값은 1,496,500% 증가로 나타남.
- 매출액이 1,496,500% 증가한 기업의 경우 2017년 매출액이 10만원이었는데, 2019년 매출액은 15억원으로 나타남.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매출액 증가율 (%)	70,786	154.9	6,742.8	-99.9	1,496,500

- 극단적인 매출액 증가율 값을 가지는 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증가율 백분위 중 99%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124%이며, 95% 또한 1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백분위	1%	5%	10%	25%	50%
매출액 증가율 (%)	-92.3	-64.7	-46.6	-21.2	2.0
백분위	75%	90%	95%	99%	
매출액 증가율 (%)	32.9	96.0	192.6	1,124.1	

- 밀집지역유형별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기업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이는 앞서 가장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보이는 기업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속해 있어 나타난 현상임.

밀집지역 유형 (매출액 증가율 %)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국가산업단지	24,732	111.0	3,743.5	-99.9	422,300
농공단지	4,443	235.2	4,911.6	-99.9	187,700
도시첨단산업단지	429	3,610.0	72,247.5	-99.8	1,496,500
신기술창업	241	517.7	3,530.9	-98.2	49,800
일반산업단지	22,388	117.9	2,676.1	-99.9	195,967
지식산업센터	17,284	137.5	4,423.8	-99.9	422,300
지역특화발전특구	1,269	380.7	4,315.5	-99.5	95,518

- 밀집지역 내 기업평균매출액의 증가율 (밀집지역별 기업 매출액 합계 증가율) 분석결과
 - 1,608개 밀집지역 70,786개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을 분석함에 있어, 밀집지역별 기업의 모든 매출액을 합한 후 합한 매출액의 2017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을 분석
 - 분석결과를 보면, 1,608개 밀집지역의 매출액 증가율의 평균값은 23.6%로 나타남.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매출액 증가율 (%)	1608	23.6	235.5	-96.9	7339.5

- 밀집지역 기업 매출액 합계 증가율의 백분위수는 다음과 같음.

백분위	1%	5%	10%	25%	50%
매출액 증가율 (%)	-62.0	-29.7	-18.2	-6.3	5.8
백분위	75%	90%	95%	99%	
매출액 증가율 (%)	20.5	44.8	76.2	242.5	

- 밀집지역유형별 밀집지역 기업 매출액 합계 증가율은 다음과 같음.

밀집지역 유형 (매출액 증가율 %)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국가산업단지	35	12.4	23.5	-17.1	107.2
농공단지	402	32.3	371.5	-94.6	7339.5
도시첨단산업단지	14	6.9	23.4	-43.5	30.3

신기술창업	14	31.1	72.8	-31.1	255.2
일반산업단지	424	12.4	45.1	-96.9	590.4
지식산업센터	636	20.8	155.1	-96.5	3650
지역특화발전특구	83	65.9	459.1	-73.0	4181.9

- 밀집지역 내 기업평균매출액의 증가율 (밀집지역별 기업 매출액 합의 증가율) 분석결과 : 밀집지역 내 기업 10개 이상 지역만 활용

- 밀집지역 유형별 매출액 증가율 현황

밀집지역 유형 (매출액 증가율 %)	밀집지역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국가산업단지	30	6.2	12.9	-17.1	51.9
농공단지	175	6.3	18.1	-37.6	110.9
도시첨단산업단지	7	13.4	18.8	-14.9	27.4
신기술창업	6	17.3	32.1	-22.2	63.0
일반산업단지	265	9.1	16.7	-41.5	90.7
지식산업센터	338	5.2	20.3	-57.8	162.4
지역특화발전특구	35	11.9	20.6	-19.4	71.0

- 매출액 합의 증가율의 경우 2년전 매출액이 적은 기업의 매출액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기업별 매출액 증가율을 구하는 방식보다 밀집지역 매출액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대체로 매출액 합의 증가율을 활용할 경우 밀집지역 자체의 매출액 증가율이 낮게 나타남.

- 특이치 5%를 제외한 기업별 매출액 증가율 평균을 활용한 자료에서는 매출액 증가율이 -5% 이하인 밀집지역의 수가 전체의 4.7%에 불과하였으나, 매출액 합의 증가율을 활용한 경우에는 22%로 상당히 많은 밀집지역이 현재의 매출액 증가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 「고시」 상 매출액 증가율 계산 방법 적정, 다만 최소 기업 수 10개 이상 유지 필요

구분	기업평균	기업평균 10개	기업(5%)평균	기업(5%)평균 10개	매출액 합	매출액 합 10개
관측치	1,608	856	1,583	856	1,608	856
평균	242.3	227.1	13.7	12.1	23.6	7.1
표준편차	1,745.0	1,537.9	24.8	12.3	235.5	18.7
최솟값	-96.9	-25.6	-62.6	-22.2	-96.9	-57.8
최댓값	35,704.2	35,704.2	187.9	71.8	7339.5	162.4
-5% 이하 밀집지역 수	252	57	225	40	437	188
-5% 이하 밀집지역 비중	15.7%	6.7%	14.2%	4.7%	27.2%	22.0%
백 1%	-52.6	-17.9	-42.1	-12.7	-62.0	-36.2

위 표	5%	-20.8	-7.7	-17.8	-4.6	-29.7	-17.7
	10%	-12.1	-0.6	-9.7	-1.2	-18.2	-12.3
	25%	3.3	11.0	1.2	4.3	-6.3	-3.5
	50%	23.7	28.8	10.6	10.6	5.8	5.3
	75%	65.6	70.4	22.2	18.6	20.5	15.5
	90%	189.9	198.1	40.2	26.5	44.8	29.2
	95%	490.8	571.6	56.8	35.4	76.2	40.7
	99%	5193.3	5193.3	100	50.3	242.5	63.0

4. 공업지역 분석

- 「시행령」 제54조의32 제1항제7호에 따른 밀집지역 기준 적정성 확인
 - 밀집지역으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만 제곱미터 당 3개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 정의하며, 해당 지역은 공업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계획입지 즉,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를 통해 밀집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7호 가목의 밀집지역의 경우 개별입지한 기업들을 밀집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볼 수 있음.

- 공업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관련 논의
 - 공업지역 및 생산관리지역과 연계된 기업의 입지문제는 공장과 관련되어 있음.
 -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상업시설에도 특정 공장의 입지가 가능하나, 제조와 관련된 공장의 경우 대체로 공업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분포하고 있음.
 - 공장입지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공장입지 기준고시」에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르므로 아래 공장입지 기준의 경우 개별입지의 경우 고려됨.
 - 따라서, 공업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밀집지역 또한 개별입지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 즉, 산업단지 제외 필요
 - 공장입지 기준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인쇄업 등 제한적 가능(대기환경보전법 등 규제 존재): 일반주거지역[조례], 중심상업지역[조례], 생산녹지지역[조례], 자연녹지지역[조례], 생산관리지역[조례]
 - 제한 없음(대기환경보전법 등 규제 존재): 준주거지역[조례], 일반상업지역[조례], 근린상업지역[조례], 계획관리지역
 - 제한 없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 준공업지역은 5천제곱미터 이상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공장설립이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은 공업지역만이 해당되며,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도시 계획조례에 따라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등의 설립이 가능하나,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생산관리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 공업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기업밀집 현황 분석

[분석개요]

-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SIMS)과 한국기업데이터(KED)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 최근 3년 (2017, 2018, 2019) 중 한 개년도라도 매출액 정보가 존재하는 기업 중 산업분류 및 위치정보 식별이 불가능한 기업 제외
 - 산업분류는 [고시] 상의 제외 기업을 분류하기 위함임.
 - 분석대상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지역	기업 수	비중
강원	32,358	3.14
경기	239,241	23.19
경남	81,050	7.86
경북	61,558	5.97
광주	35,600	3.45
대구	59,097	5.73
대전	31,881	3.09
부산	70,983	6.88
서울	153,551	14.88
세종	4,760	0.46
울산	23,909	2.32
인천	55,739	5.40
전남	40,934	3.97
전북	37,478	3.63
제주	18,960	1.84
충남	49,175	4.77
충북	35,404	3.43
전체	1,031,678	100.0

□ 공업지역 및 생산가능지역, 산업단지의 면적과 SIMS 기업현황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 및 생산가능지역의 기업밀도를 분석

- 지역별 공업지역 및 생산가능지역에서 산업단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과 앞서 SIMS를 통해 추출한 지역별 중소기업에서 산업단지 소속 중소기업 수를 제외한 값을 활용
 - 이는 모든 산업단지가 공업지역 및 생산가능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하며, SIMS 중소기업에 산업단지에 입지한 중소기업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하는 것임.

* 산업단지 기업 수는 지역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를 합한 값임.

- 또한 SIMS에 존재하는 기업들은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생산가능지역 이외에는 입지해 있지 않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 이는 수도권지역에서는 과도한 밀집경향을 나타낼 수 있음.

- (G)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당 기업수를 나타냄.

○ 분석결과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세종 등 특별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당 기업수가 10~35개까지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당 0.1개, 전남의 경우에는 0.4개로 매우 적게 나타나며,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1.5개로 나타나 지금의 1만제곱미터당 3개가 아주 낮은 기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시도	공업지역 + 생산관리지역 (A)	산업단지 (B)	(C): (A)-(B)	SIMS 중소기업 수(D)	산업단지 기업 수 (E)	(F): (D)-(E)	(G): (F)/(C) * 10,000
서울	19,977,301	3,207	19,974,094	32,358	12,392	19,966	10.0
부산	64,416,522	43,636	64,372,886	239,241	9,035	230,206	35.8
대구	41,210,348	44,513	41,165,835	81,050	9,264	71,786	17.4
인천	95,642,637	21,930	95,620,707	61,558	11,497	50,061	5.2
광주	30,797,057	32,748	30,764,309	35,600	3,349	32,251	10.5
대전	18,031,438	71,288	17,960,150	59,097	1,483	57,614	32.1
울산	94,404,246	90,239	94,314,007	31,881	1,844	30,037	3.2
세종	28,278,932	9,666	28,269,266	70,983	254	70,729	25.0
경기	565,291,437	243,917	565,047,520	153,551	31,292	122,259	2.2
강원	551,080,425	25,873	551,054,552	4,760	1,727	3,033	0.1
충북	461,463,371	82,423	461,380,948	23,909	2,133	21,776	0.5
충남	737,783,481	113,475	737,670,006	55,739	2,654	53,085	0.7
전북	792,682,546	131,775	792,550,771	40,934	3,559	37,375	0.5
전남	917,796,633	226,168	917,570,465	37,478	3,313	34,165	0.4
경북	850,229,804	143,499	850,086,305	18,960	5,631	13,329	0.2
경남	667,905,728	136,702	667,769,026	49,175	6,199	42,976	0.6
제주	252,537,739	2,456	252,535,283	35,404	227	35,177	1.4
전국	6,189,529,645	1,423,515	6,188,106,130	1,031,678	105,853	925,825	1.5

○ 추가적으로 공업지역만을 고려할 경우를 살펴봄.

-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만을 고려하였을 경우에도 강원은 1만제곱미터당 0.8, 경북은 0.9로 1만제곱미터 당 3개 이하를 보여주고 있음.

시도	공업지역 (A)	산업단지 (B)	(C): (A)-(B)	SIMS 중소기업 수(D)	산업단지 기업 수 (E)	(F): (D)-(E)	(G): (F)/(C) * 10,000
서울	19,977,301	3,207	19,974,094	32,358	12,392	19,966	10.0
부산	64,416,522	43,636	64,372,886	239,241	9,035	230,206	35.8
대구	41,210,348	44,513	41,165,835	81,050	9,264	71,786	17.4
인천	67,588,669	21,930	67,566,739	61,558	11,497	50,061	7.4
광주	25,269,614	32,748	25,236,866	35,600	3,349	32,251	12.8
대전	17,097,117	71,288	17,025,829	59,097	1,483	57,614	33.8
울산	81,572,240	90,239	81,482,001	31,881	1,844	30,037	3.7
세종	8,661,894	9,666	8,652,228	70,983	254	70,729	81.7
경기	134,320,648	243,917	134,076,731	153,551	31,292	122,259	9.1
강원	38,757,527	25,873	38,731,654	4,760	1,727	3,033	0.8
충북	66,117,655	82,423	66,035,232	23,909	2,133	21,776	3.3
충남	120,281,493	113,475	120,168,018	55,739	2,654	53,085	4.4
전북	65,675,157	131,775	65,543,382	40,934	3,559	37,375	5.7
전남	168,313,120	226,168	168,086,952	37,478	3,313	34,165	2.0
경북	153,610,117	143,499	153,466,618	18,960	5,631	13,329	0.9
경남	140,630,803	136,702	140,494,101	49,175	6,199	42,976	3.1
제주	5,367,109	2,456	5,364,653	35,404	227	35,177	65.6
전국	1,218,867,334	1,423,515	1,217,443,819	1,031,678	105,853	925,825	7.6

5. 선정지표 시뮬레이션

- 특별지원지역 지정조건은 개별 기업 및 밀집지역과 관련된 지표를 통해 지정됨.
 - 「고시」에서는 특정 밀집지역 내 개별 기업들의 경영현황을 나타내는 2개 지표와 특정 밀집지역이 속한 지역의 경제동향을 나타내는 지표 4개로 구성되어 있음.
 - 개별 기업들의 경영현황을 나타내는 지표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경우에는 밀집지역 내의 정보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의 정보 또한 활용 가능
 - 따라서, 밀집지역 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산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개별 기업들의 경영현황을 나타내는 1개 지표와 특정 밀집지역이 속한 지역의 경제동향을 나타내는 5개 지표로 구성됨.
- 지표 구성 및 출처
 - 선정지표는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로 구분이 가능하며, 필수지표 2개 모두와 선택지표 중 1개가 충족될 경우 지정조건 만족
 - 필수지표
 - ① 밀집지역 내 기업 매출액
 - ② 밀집지역 내 기업 피보험자수 (or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의 피보험자수)
 - 선택지표
 - ① 밀집지역 내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or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 ②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의 공장등록 수
 - ③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의 전력사용량
 - ④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
 - 선정지표별 분석대상, 분석범위, 자료출처 등은 다음과 같음.

구분	지표명	분석대상	분석범위	밀집지역 내 기업특정	자료출처	시차
필수 (모두 충족)	매출액	기업	밀집지역	○	지자체 제출	1~2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업	시군구 또는 밀집지역	△	근로복지공단	1~2개월
선택 (1개 충족)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기업	시군구 또는 밀집지역	△	국민연금공단	1~2개월
	공장등록현황	공장	시군구	×	한국산업단지공단	1~2개월 (반기)

	전력사용량	전체	시군구	×	한국전력	1~2개월
	아파트매매가격 지수	아파트	시군구	×	한국감정원	1~2개월

□ 지표별 분석대상 및 자료현황

○ 중소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각 지표별 분석대상 및 자료현황은 다음과 같음.

- 분석단위는 해당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분석의 단위
- 분석대상은 해당 분석단위가 속하는 대상으로 제출기업과 지역전체로 구분
 - * 제출기업: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신청시 제출한 기업리스트
 - * 지역전체: 밀집지역 또는 시군구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신청시 제출 이외 기업 포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지표는 시군구 이외에 밀집지역의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도 해당지표 산출이 가능 (“또는”으로 선택) 하며, 해당 지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통해 개별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요청할 경우 기업별 현황을 받을 수 있음.
 - * 기관간 협의를 통한 중기부 공문 요청 등이 필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경우 지역구분이 취득 사업장 소재지역(시군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밀집지역 내 피보험자수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밀집지역 내에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자등록번호 이외의 사업장이 존재할 경우 「고시」에서 산출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밀집지역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맞지 않음.
-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경우 밀집지역 내 피보험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밀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모든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
-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의 경우 「고시」에서 산출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밀집지역 내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는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지원지역 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밀집지역 내에 존재하지만 특별지원지역 대상이 아닌 기업들의 현황까지 모두 포괄하는 지표임.
-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를 밀집지역 내 지표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밀집지역의 범위를 읍면동 또는 우편번호를 통해 특정하여야 함. 즉, 공간범위로 특정하는 것이 필요
- 결국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는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개별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산출된 지표가 밀집지역 내의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바, 단순히 지자체에서 제출한 특별지원지역 대상인 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는 해당 지표 산출이 불가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밀집지역 내 모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획득이 가능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는 밀집지역의 우편번호 또는 읍면동 구분이 명확히 가능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당 밀집지역 지표 산출이 가능

지표명	고시			자료	비고	자료 획득 여부
	분석단위	분석대상	분석범위			
매출액	개별기업	제출기업	밀집지역	지자체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개별기업	지역전체	시군구	고용정보원		○
	개별기업	지역전체	밀집지역		사업자등록번호 활용	△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개별기업	지역전체	시군구	국민연금공단		○
	개별기업	지역전체	밀집지역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활용	△
공장등록현황	개별공장	지역전체	시군구	팩토리온		○
전력사용량	지역전체	지역전체	시군구	한국전력		○
아파트매매가격 지수	지수	지역전체	시군구	통계청		○

□ (필수지표) 매출액

<p>「매출액」</p> <p>1.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p> <p>가.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최근 1년간 평균 매출액이 2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p>

○ 자료 확보

- 최근 및 2년전 매출액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시 조사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기존 현황 분석을 위해서 한국기업데이터(KED)와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SIMS) 자료를 활용
 - *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SIMS)에는 2019년 기준 64.9만개의 기업에 대한 매출액(국세청 정보)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SIMS)과 한국기업데이터(KED) 정보를 결합하여 SIMS에 매출액이 없는 기업(정부지원 사업 비수혜 기업)은 KED 자료를 활용
- 최근 3년 내 매출액 정보가 존재하는 기업은 총 1,607,464개에 달함.
- 대체로 기업의 매출정보는 결산이 끝나는 3월 이후에 확인이 가능함. 따라서 지자체에서 기업별 매출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 4월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

* 4월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를 기준
(예: 2021년 3월 신청시 2019년, 2017년 매출정보 활용)

* 4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년도를 기준
(예: 2021년 4월 신청시 2020년, 2018년 매출정보 활용)

- SIMS, KED 등 통계자료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정보는 당해연도 10월 이후 활용 가능

○ 밀집지역 내 개별기업 자료 확장 추진 필요 여부

- 이미 개별기업별 자료 획득이 가능하므로 필요치 않음.

□ (필수지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

나.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 지역 또는 밀집지역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2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자료 확보

- 시군구 지역 자료는 ‘고용정보원’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확보 가능

* https://eis.work.go.kr/sys01012.do?autoRptSrch=Y&tranId=sys01012_00&menuId=061020030

* 시군구별·월별 통계자료 확보가 가능하며 시차는 1.5~2개월

- 밀집지역 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협조 공문을 통해 요청 가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밀집지역 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가능성 낮음.

* 지자체에서 해당 밀집지역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정보 제공시 가능

○ 밀집지역 내 개별기업 자료 확장 추진 필요 여부

- 밀집지역 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필요

○ 쟁점사항

- 「고시」 상의 ‘밀집지역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경우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시군구 지역에 대한 기준만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선별지표)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수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수」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 지역 또는 밀집지역 내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가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3개월간 평균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와 2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증감률보다 10%p 이상 낮은 경우

○ 자료 확보

– 시·군·구 지역 자료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보 가능

*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로부터 분기별로 자료 획득

* 시·군·구별·월별 통계자료 확보가 가능하며 시차는 1개월

– 밀집지역 내 자료는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우편번호와 협조 공문을 통해 요청 가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밀집지역 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우편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가능성 낮음.

* 지자체에서 해당 밀집지역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우편번호 정보 제공시 가능

○ 밀집지역 내 개별기업 자료 확장 추진 필요 여부

– 밀집지역 내 모든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우편번호 필요

○ 쟁점사항

– 「고시」 상의 ‘밀집지역 내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의 경우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시·군·구 지역에 대한 기준만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선별지표) 공장등록현황

「공장등록현황」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 지역 내 공장등록이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6개월간 평균 공장등록현황과 2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공장등록현황을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공장등록 증감률보다 10%p 이상 낮은 경우

○ 자료 확보

- 시군구 지역 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등록공장현황을 통해 확보 가능

* <https://www.factoryon.go.kr/bbs/firtblRecsroomBbsList.do>

* 시군구별·월별 통계자료 확보가 가능하며 시차는 1개월

○ 밀집지역 내 개별기업 자료 확장 추진 필요 여부

- 밀집지역의 범위가 명확히 확보될 경우 (읍면동, 우편번호 등 공간정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해당 밀집지역의 공장등록현황을 확인가능 할수 있으나, 산업단지공단과의 협의가 어려움.

- 또한 밀집지역의 경우 그 지역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지식산업센터) 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실제 특정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장등록현황 확보 필요성은 낮음.

□ (선별지표) 전력사용량

「공장등록현황」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 지역 내 전력사용량이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3개월 간 평균 전력사용량과 2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전력사용량을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 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전력사용량 증감률보다 10%p 이상 낮은 경우

○ 자료 확보

- 시군구 지역 자료는 ‘한국전력공사’ 시군구별 전력사용량을 통해 확보 가능

* https://home.kepco.co.kr/kepco/KO/ntcob/list.do?boardCd=BRD_000283&menuCd=FN05030105

* 시군구별·월별 통계자료 확보가 가능하며 시차는 1.5~2개월

○ 밀집지역 내 개별기업 자료 확장 추진 필요 여부

- 밀집지역 내 개별기업의 사업자등록범위가 확보될 경우 중기부, 한국전력과의 협약을 통해 자료 획득은 가능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밀집지역을 범위로 할 경우 지자체에서 특별지원지역 내 기업뿐만 아니라 밀집지역 내에 속하는 모든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여야 가능

□ (선별지표)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아파트매매가격지수」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 지역 내 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3개월간 평균 아파트매매가격지수와 2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아파트가격매매지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감률보다 10%p 이상 낮은 경우

○ 자료 확보

- 시군구 지역 자료는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통해 확보 가능

* http://www.r-one.co.kr/rone/resis/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HOUSE_21111

* 시군구별·월별 통계자료 확보가 가능하며 시차는 1.5~2개월

○ 밀집지역 내 개별기업 자료 확장 추진 필요 여부

- 밀집지역 내에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만일 아파트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며, 확장할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음.

○ 쟁점사항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의 경우 군지역의 가격지수 활용에 제약이 존재

- 78개 시지역과 104개 구지역은 모두 조사대상 및 공표지역에 포함되나, 82개 군지역의 경우 24개만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이 중 8개 군지역만 공표지역에 포함되어 실제 74개 군지역에 대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기 어려움.

* 매매가격지수가 존재하는 군지역: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홍성군·예산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공표하지 않는 군지역의 경우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이 필요

- 1안) 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존재하지 않는 군지역의 경우에는 낙후도를 인정하여 해당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하는 방안

- 2안) 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존재하지 않는 군지역의 경우 같은 시도의 가장 낮은 매매가격지수

변화값을 적용

□ 시뮬레이션 결과

- 각 기준별 현 「고시」 상 기준 및 충족 밀집지역 또는 시군구 수
 - (매출액: 전체활용) 1,608개 밀집지역 중 437개 밀집지역 해당 (27.2%)
 - * 밀집지역별 절대치로 100분의 5 감소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50개 시군구 중 37개 시군구 해당 (14.8%)
 - * 시군구별 상대치로 전체 평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평균) 4.288, (-5%p) -0.712
 -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250개 시군구 중 1개 시군구 해당 (0.4%)
 - * 시군구별 상대치로 전체 평균보다 10%p 이상 낮은 경우 : (평균) 9.421, (-10%p) -0.579
 - (공장등록현황) 249개 시군구 중 39개 시군구 해당 (15.7%)
 - * 시군구별 상대치로 전체 평균보다 10%p 이상 낮은 경우 : (평균) 3.332, (-10%p) -6.668
 - * 시군구중 대구 달성군 자료 없음.
 - (전력사용량) 229개 시군구 중 6개 시군구 해당 (2.6%)
 - * 시군구별 상대치로 전체 평균보다 10%p 이상 낮은 경우 : (평균) -0.230, (-10%p) -10.23
 - (아파트매매가격지수) 155개 시군구 중 23개 시군구 해당 (14.8%)
 - * 시군구별 상대치로 전체 평균보다 10%p 이상 낮은 경우 : (평균) 4.651, (-10%p) -5.349
- 시뮬레이션 결과
 - 1,608개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고시] 상 대상지역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필수지표		선택지표			밀집지역 수	
	매출액	피보험자 수	국민연금 가입장 수	공장등록 현황	전력 사용량		아파트매매 가격지수
(1)	○						437
(2)	○	○					52
(3)	○	○	○				0
(4)	○	○		○			14
(5)	○	○			○		1
(6)	○	○				○	2
(7)	○	○	OR				15

- 15개 밀집지역은 다음과 같음. (음영 기업 수 10개 이상 밀집지역)
 - * (농공단지) 경북 칠곡군 **** 농공단지 19
 - (일반산업단지) 부산 사하구 **** 일반산업단지 90
 - (일반산업단지) 경북 칠곡군 **** 일반산업단지 6

(지식산업센터) 부산 사하구 **** 지식산업센터	3
(지식산업센터) 경기 군포시 **** 지식산업센터	16
(지식산업센터) 인천 동구 **** 지식산업센터	1
(지식산업센터) 경기 군포시 **** 지식산업센터	12
(지식산업센터) 경기 군포시 **** 지식산업센터	17
(지식산업센터) 경기 군포시 **** 지식산업센터	2
(지식산업센터) 경기 군포시 **** 지식산업센터	2
(지식산업센터) 부산 금정구 **** 지식산업센터	7
(지식산업센터) 경기 군포시 **** 지식산업센터	11
(지식산업센터) 경기 군포시 **** 지식산업센터	46
(지식산업센터) 경기 군포시 **** 지식산업센터	1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남 구례군 지역특화발전특구	16

□ 현 「고시」 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선정지표 중 소상공인과의 연계성을 고려, 선정지표 개선방안 검토

- 현 선정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밀집지역 모두에 공통 적용됨.
- 필수지표 2개 중 매출액 지표 관련
 - 밀집지역 내 매출액 변화의 경우 소상공인의 매출액을 신청당시 확인할 수 있다면, 매출액 변화를 활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음.
 - 물론 소상공인의 경우 정확한 매출액을 집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을 통해 매출액 정보 확인 가능
 - 이 또한 특별지원지역을 신청하는 지자체에서 정보획득이 필요
- 필수지표 2개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지표 관련
 -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므로 해당 밀집지역이 속하는 시군구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변화는 소상공인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전통시장과 같이 1인 자영업자가 많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수의 변화가 직접적인 해당 밀집지역의 현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별지표 4개 관련
 -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공장등록현황, 전력사용량, 아파트매매가격지수의 선별지표의 경우 특정 밀집지역이 아닌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의 경기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임.

-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필수지표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병행 또는 대체해서 활용 가능한 지표 발굴 필요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통한 소상공인 인허가 증감 활용 검토

- 지방행정 인허가 시스템에서 그룹별, 업종별로 인허가 최신현황 정보 활용 가능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전국의 인허가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개방하는 시스템임.
 - 191종의 인허가 (분류상에는 190개) 를 7개 카테고리, 36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제공
- 카테고리별 분류 중 식품 - 음식점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

카테고리	중분류	소분류
식품	음식점	관광식당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분류 중 가장 많은 자영업자를 포괄하며,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한 식품 - 음식점 -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변화를 분석함.

□ 분석대상 일반음식점 인허가 건수는 1,908,258건임.

- 일반음식점 인허가 건수 중 영업 중은 669,527개 (35.1%)이며, 폐업은 1,238,747개 (64.9%)
 - 인허가 정보는 최초 인허가부터 2020년 12월까지 정보를 포함.
- 시도별 영업 중 및 폐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시도	전체	영업 중	폐업
강원	84,638	30,209	54,429
경기	393,164	139,130	254,034
경남	121,392	49,190	72,202
경북	104,680	42,818	61,862
광주	51,204	17,970	33,234
대구	80,185	30,475	49,710
대전	51,587	19,444	32,143
부산	110,868	42,804	68,064
서울	458,263	123,075	335,188
세종	6,656	3,512	3,144
울산	42,988	15,352	27,636
인천	88,029	31,048	56,981

전 남	75,564	28,418	47,146
전 북	64,845	24,858	39,987
제 주	31,729	14,327	17,402
충 남	75,025	31,905	43,120
충 북	67,441	24,992	42,449
전 체	1,908,258	669,527	1,238,731

- 「고시」 상 기준에 맞춰 시군구 기준 최근 3개월 및 2년전 3개월 폐업 현황을 비교
 - 2020년 10, 11, 12월 폐업 수치와 2018년 10, 11, 12월 폐업 수치 비교
 - * 2020년 10월 폐업자수 : 4,592개
 - * 2020년 11월 폐업자수 : 5,254개
 - * 2020년 12월 폐업자수 : 6,402개
 - * 2018년 10월 폐업자수 : 5,348개
 - * 2018년 11월 폐업자수 : 4,621개
 - * 2018년 12월 폐업자수 : 6,364개
 - 기준은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 지역 내 일반음식점 폐업자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 (신청 직전 3개월간 폐업자수와 2년전 같은 기간의 평균 폐업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 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폐업자수 증감률 보다 5%p 이상 높은 경우’
 - 또는 6개월의 값 활용
- 전체 일반음식점의 2018년 10~12월 폐업자수 대비 2020년 10~12월 폐업자수는 약 0.52% 상승하였으며, 0.52%의 +5%p는 5.52%임.
- 따라서, 전국 시군구 중 일반음식점 폐업자수가 5.52% 이상 증가한 시군구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 전국 250개 시군구 106개 시군구가 해당됨.
- 일반음식점 또는 모든 업종 인허가 정보를 활용한 폐업자수를 필수지표 중 하나인 피보험자 수 변화의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6.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제도 차별화 방안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유사제도

-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비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기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제도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2017년 신설되었으며, 2016.10.27. 정부제안(의안번호: 2002973)으로 발의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8의2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정의
 -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동법 제17조의4) 조항 존재
 - [고시]상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가능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공고 현황
 - * (2018.4.5.~20.4.4.: 2년) 군산시
[지원내용]
 - 1) 근로자·실직자 지원
 - 2) 지역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지원
 - 3)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 4) 지역상권 및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등
 - * (2018.5.29.~19.5.28.: 1년)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지원내용]
 - 1) 근로자·실직자 지원
 - 2) 지역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지원
 - 3)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 4) 지역상권 및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등
 - * (2019.5.29.~21.5.28.: 2년)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지정연장)
 - * (2020.4.5.~22.4.4.: 2년) 군산시 (지정연장)

-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에 기반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제도임.
 - ‘고용위기지역’은 2009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신설되어 추진되었으며, 이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개정, 2014년부터 현재의 ‘고용위기지역’으로 개정되어 추진되고 있음.
 - ‘고용위기지역’이라는 명칭은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상에 제시되어 있으며,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의 2단계 대응체제로 구분되어 있음.
 - ‘고용위기지역’이란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말함.
 - ‘고용재난지역’은 필수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되며, 현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없음.
 -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상·재정상·금융상 특별지원
 - * 중소기업 용자, 신용보증기금 우선적 신용보증 및 우대, 고용보험료 연장 등
 - 고용위기지역 지정 현황
 - * (2018.4.5.~19.4.4.: 1년)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지원내용]
 - 1)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확대, 사업주의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 2)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 훈련비 단가 지원)
 - 3)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
 - * (2018.5.4.~19.5.3.: 1년)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지원내용]
 - 1)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확대, 사업주의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 2)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 훈련비 단가 지원)
 - 3)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
 - * (2019.4.5.~20.4.4.: 1년)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1년 연장)
 - * (2019.5.4.~20.5.4.: 1년)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1년 연장)
 - * (2020.4.5.~20.12.31.)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연말까지 연장)

* (2020.5.4.~20.12.31.)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연말까지 연장)

* (2021.1.1.~21.12.31.: 1년)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 (2021.1.1.~21.12.31.: 1년)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95년 낙후된 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모태로 하며, ‘20년 지정범위 및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개편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으며, 2021년 최초 지정 목표

– 기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05.3.21.부터 5년간) 북평국가산업단지(강원도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강원도 동해시), 정읍제2 지방산업단지(전라북도 정읍시), 대불국가산업단지(전라남도 영암군)

* (2010.3.21.부터 5년간) 북평국가산업단지(강원도 동해시), 북평일반산업단지(강원도 동해시)

* (2010.4.22.부터 5년간)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전라북도 김제시), 나주일반산업단지(전라남도 나주시), 장흥해당일반산업단지(전라남도 장흥군)

* (2015.3.13.부터 5년간) 나주 일반산업단지(전남 나주시),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전북 김제시), 장흥 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전남 장흥군), 북평 국가산업단지(강원도 동해시), 북평 일반산업단지(강원도 동해시),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전남 나주시),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전남 강진군), 정읍 첨단과학 산업단지(전북 정읍시)

* (2016.9.9.부터 5년간)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전남 목포시)

* (2018.3.21.부터 5년간) 담양일반산업단지(전남 담양군),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전남 영광군)

* (2020.2.27.부터 5년간) 북평국가산업단지(강원도 동해시), 북평일반산업단지(강원도 동해시),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전북 김제시),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전북 정읍시), 나주일반산업단지(전남 나주시), 나주혁신산업단지(전남 나주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전남 장흥군), 강진산업 단지(전남 강진군), 동함평일반산업단지(전남 함평군),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전남 광양시)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차별화 방안

○ 지원대상 공간적 범위의 차별화

- 동일 시군구에서도 특정 소규모 공간범위(밀집지역)별로 산업 및 소규모 지역특성에 따라 위기 발생상황이 다를 수 있음.

* 충청남도 예산군 일반산업단지별 2017~2019년 매출액 증가율 비교

**** 일반산업단지(67개) 4.1% :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38.8%

**** 산업단지(21개) -9.4% : 1차 금속 제조업 38.1%

**** 일반산업단지(57개) 16% :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6.3%

**** 농공단지(39개) -12.0% : 전기장비 15.4%

**** 농공단지(9개) 7.7% : -

* 경상남도 김해시 밀집지역유형별 2017~2019년 매출액 증가율 비교

**** 일반산업단지(142개) -2.3% : 기타기계 및 장비 33.8%

**** 일반산업단지(201개) 10.4% : 기타기계 및 장비 37.3%

**** 일반산업단지(15개) -6.5% : 금속 가공제품 26.7%

**** 일반산업단지(290개) 12.4% : 금속 가공제품 31.7%

**** 농공단지(76개) -6.9% : 자동차·트레일러 50.0%

**** 농공단지(34개) 113% : 기타기계 및 장비 41.2%

* 경상북도 경주시 일반산업단지별 2017~2019년 매출액 증가율 비교

**** 일반산업단지(99개) 1.1% : 금속 가공제품 36.4%

**** 지방산업단지(28개) 48.5% : 금속 가공제품 21.4%

**** 일반산업단지(56개) -1.1% : 기타기계 및 장비 37.5%

**** 일반지방산업단지(48개) -19.5% : 자동차·트레일러 25.0%

**** 농공단지(18개) -14.5% : 자동차·트레일러 44.4%

**** 농공단지(9개) 27.2% : -

* 부산 강서구 일반산업단지별 2017~2019년 매출액 증가율 비교

**** 지방산업단지(344개) 8.8% : 기타기계 및 장비 31.4%

**** 일반산업단지(110개) -3.9%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47.3%

**** 지식산업센터(23개) -21.4% :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18.0%

**** 지식산업센터(22개) 21.1% : 금속 가공제품 95.5%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이 수도권 또는 광역시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지만, 지정요건 등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이들 지역이 포함되기 어려워 광역대도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특정 밀집지역은 정책수혜를 받기 어려움.

-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지식산업센터 매출액 증가율: -3.0%
- 경기도 화성시 **** 도시첨단산업단지 매출액 증가율: -13.0%
- 경기도 시흥시 **** 신기술창업 매출액 증가율: -11.2%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지식산업센터 매출액 증가율: -12.4%
- 서울 구로구 **** 지식산업센터 매출액 증가율: -8.9%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시군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밀집지역을 지원대상으로 기존 지원제도상 사각지대 보완 가능

○ 지원내용 측면의 차별화

- 지원내용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지역의 지원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다만, 공간적 측면의 이점 즉,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특별지원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경우 지원내용의 차별화 가능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지역과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의 모든 수혜대상을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정책 추진이 어려움.
- * 별도의 조세지원정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창업기업 등에 조세지원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우 공간적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보편적 지원정책 추진 가능

○ 공간적 지원범위의 차별화 및 지원내용 측면의 차별화 가능

□ 지원제도별 지원제도 비교를 통한 차별화 방안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제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제도들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원지역에 대해 실제 지원된 사업들을 비교함으로써 지원제도 차별화 가능성 분석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제도 지원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감면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and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정 후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 * 법률의 명칭 변경 필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 수도권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수도권 소재 기업들까지 혜택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자

- 중기부 54개 지원사업 평가 및 지원 우대

대상	분야	사업명	담당과	우대사항
중 소 기업	R&D	기술개발지원 (29개 사업)	기술개발과	평가가점(1)
		위기지역 Scale-Up R&D	지역기업육성과	지정시 지원
		지역특화산업 R&D	지역기업육성과	평가가점(2)
	비 R&D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지역기업육성과	평가가점(2)
		위기지역기업비즈니스센터	지역기업육성과	지정시 지원
		실전창업교육	창업촉진과	평가가점(1)
		재도전성공패키지	재기지원과	평가가점(1)
		재기건설팅	재기지원과	요건완화
		제조중소기업혁신바우처	지역기업정책과	우선지원 (10% 이내)
		유통망 진출지원	판로정책과	평가가점(1)
	인력	산업기능요원제도	인력육성과	평가가점(4)
		맞춤형기술파트너	기술개발과	평가가점(1)
	인프라	스마트공장 구축	제조혁신지원과	우선평가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제조혁신지원과	우선평가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업금융과	대상포함, 요건완화
		협동화사업	지역기업정책과	과제발굴 컨설팅
재도약자금		재기지원과	요건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		벤처혁신정책과	신용도 검토요건 완화	
소 상 공 인	인프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전통시장육성과	평가가점(1)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소상공인혁신과	평가가점(2)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소상공인혁신과	평가가점(2)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소상공인혁신과	평가가점(2)
	자금	지역신보 보증	기업금융과	보증한도 우대 * 수혜대상이 지역신보임
		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정책과	대상포함
	컨설팅	소상공인역량강화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자부담 감면
	판로	라이브커머스 지원	온라인경제TF	우선방송 편성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원사업의 경우 대체로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시 우대가점 적용이나, 지원요건 완화, 우선평가대상 포함 등을 지원
- 즉, 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대다수임.
- 자금지원사업 중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보편적 지원정책임.
- * 이 또한 2021년 사업공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추후 실제 지정이 이루어지면 반영 필요
- 지역신용보증재보증 지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원으로 보임.

○ 산업위기특별지원지역 지원사업 현황

- (금융) 긴급경영안정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지원, 만기연장 지원, 채도약자금 지원, 산기보 특별보증지원
- (R&D) 기업 및 소상공인 연구개발 활동 지원
- (비R&D) 기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지원
- (인프라)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 수상형 태양광종합평가센터 구축 등 인프라 구축
- 재직 근로자 및 실직자, 퇴직자 지원,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 지원
- 2018년 기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목포, 해남, 영암)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원사업	지원내용	문의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지원금 50백만원, 자부담 10%)	전남테크노파크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조선소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대상 기술개발, 업종전환 지원	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
사업전환자금 (채도약)	신규 업종 전환 추진 중소기업의 용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희설비 거래알선 등 종합·맞춤 연계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
경제협력권산업육성 (산업다각화지원)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지원금 50백만원, 자부담 10%)	전남테크노파크
실직자 자녀대상 대학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월소득 지원기준(246만원 → 302만원) 자녀당(500만 → 700만)	한국장학재단 대출지원부
특별경영안정자금	최대 7천만원, 우대금리 적용(3.18% → 2.78%), 5년 상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포센터
조선기자재업체 등 특별보증 지원	보증한도 상향(5천 → 7천만원), 보증료율 인하(0.8% → 0.5%)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지역의 경우 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지원 및 R&D, 비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R&D비R&D 지원사업의 경우 별도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 사업에서 특별지원지역에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 현황

- 생활안정자금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취업촉진수당 지급, 훈련연장 급여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 2018년 기준 고용위기지역(목포, 영암)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원사업	지원내용	문의	비고
고용유지지원금	임금보전 금품 지원사항 (2/3→ 9/10, 1일 6만원 → 7만원)	목포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보험료 상향 지원(240%→ 300%), 훈련비 지원 단가의 100%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전남서부지사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 징수금·체납처분 유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고용보험자연신고 과태료 면제	과태료 면제(1인당 3만원)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조업시작일부터 1년간 임금의 1/3~1/2(1일 6만원 한도)	목포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1인당 연 667만원 → 연 14백만원 상향		
고용촉진장려금	위기지역 퇴직자 인건비 지원 (연 720만원 한도)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훈련 기간 동안 구직급여 100% 지원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인상(1일 7,530원) 광역구직활동비 요건 완화(50km→25km) 이주비 시간제한 폐지	목포고용센터 실업급여팀	근로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참여 기간 중 생계비 대부용자 한도 확대 (1천만원→2천만원)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임금체불생계비(2천만원 한도), 자녀학자금(1자녀 당 7백만원) 임금감소생계비(1천만원 한도), 혼례비(1,250만원), 의료·장례비 (1천만원), 부모요양비(1천만원), 소액생계비(2백만원)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소득 요건 면제, 2단계 직업훈련 자부담(5~50%) 면제	목포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	1인당 지원한도 상향 (2백만원→3백만원)	목포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고용보험법」을 통한 지원사업들이 주요 사업임.

○ 차별화 방안

- 자금지원의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포함뿐만 아니라 산업위기 특별지원지역에 준하도록 지정 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도 추진 필요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사업 필요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기존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 내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별도 내역사업을 추가하는 방안 (지역 TP 활용)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기존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 내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별도 내역사업을 추가하는 방안 (지역 소진공 활용)

*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 사업의 확대 방안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조세감면 혜택 범위 확장 필요

- 「고용보험법」 연계를 통한 고용관련 지원정책 추진

*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 지원) 제3항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관련 내용 포함 필요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 지원 등)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지정기준)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에 대해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 제15조의 4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조세지원제도 확장

○ 지원지역에 포괄적 적용가능 조세지원제도 도입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등(이하: 위기지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됨.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별도 조항에 반영되어 있음.

「조세제한특례법」 (위기지역)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0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 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③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제2항에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

③ 제2항에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00조제1항을 준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00분의 50) 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1. 2018년 12월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현재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해당 요건완화가 필요²⁾)
- 요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을 말함.
 - *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 * 거제시 (25만), 김해시 (54만), 진주시 (35만), 경산시 (26만), 순천시 (28만), 군산시 (26만), 아산시 (32만) 등에 위치한 밀집지역은 수혜 받지 못함.
- 따라서, 이 경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음.
- 또한, 감면한도 규정이 존재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감면한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 투자누계액 등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조항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중소기업 구분 없음)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중소기업 구분 없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중소기업 구분 없음)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중소기업 구분 없음)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중소기업 구분 없음)

2) 관련된 전문가 자문결과 ‘적용제외지역의 축소’와 ‘감면한도규정의 완화’는 정책결단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답변받음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중소기업 구분 없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중소기업 구분 없음)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중소기업 구분 없음)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중소기업 구분 없음)

- 감면한도 규정은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감면하지 않는 조항이나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보여지므로, 명백히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본 조항에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 필요
- * 해당 조항이 중소기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농업단지와 같이 묶여 있어 발생한 현상으로 보임.

7.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 및 개선방안

□ 제도차별화 방안에 따른 '21년 제도운영 방안

- 밀집지역에 대한 정의가 보다 명확하고, 지원대상 특징이 보다 용이한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현황 관리가 가능한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필요
 - 중소기업밀집지역의 경우 각 밀집지역이 모두 관련법에 의해 지정 및 관리되고 있으므로, 소재 기업 현황 및 여건 파악이 용이
 - * 공업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내 밀집지역의 경우 지자체 신청시 밀집지역 범위가 확정됨.
 - 소상공인밀집지역의 경우 밀집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우, 인가된 밀집지역은 범위와 현황 등은 파악가능하나 미인가된 경우는 현황 확인조차 쉽지 않으며, 인가된 밀집지역 또한 지역 내 소상공인 경영현황 파악이 어려움.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을 1~7호 지역으로 명시하여 타 밀집지역의 경우 지정 신청 대상이 아님. 다만, 공업지역의 경우 범위 및 기업수 최소요건만 존재

	구분	지정 등	지정권자 등	비고
중소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일반산업단지	지정	시도지사	
	농공단지	지정	시군구청장	
	도시형첨단산업단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서울특별시 지정 불가
	지식산업센터	승인	시군구청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시도지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업지역·생산관리지역 (1만 m ² , 3개 이상)	-	-	
	지역특화발전특구 (1만 m ² , 3개 이상)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상점가	인정	시군구청장	
	전통시장	인정	시군구청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군구청장	조례로 정함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시군구청장	
	도시형소상공인 집적지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형첨단산업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중심으로 초기 지정 추진 필요

-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밀집지역 및 지역 내 중소기업 관리
- 소규모 밀집지역에 대한 보편적 지원강화라는 차별화 전략에 맞춰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초기 지정 지양
- 지식산업센터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관리자체가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하나의 건물이 밀집지역 대상임.
 -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센터별 10개 미만의 기업을 보유한 센터가 다수(34%)이며, 수도권 중심(82%), 산업분포 중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다수 존재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현재 16개 지역모두 대학내 부지에 위치해 있어, 특별지원지역 지정시 범위가 대학 내 지역에 한정됨.
- 소상공인밀집지역 지정 방안
 - 기존 지원사업 대상 밀집지역 또는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제도시행이 필요
 - * 소상공인밀집지역의 관리주체 (상인회 등) 가 명확해야 하며, 밀집지역 내 소상공인의 현황 파악이 가능해야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기 수혜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초기 지원대상 선정 필요
 - 또는 비교적 범위가 명확하고 관리가 가능한 상권활성화구역,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중심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가능
 - * 다만, 상권활성화구역의 경우 그 자체로 현재 경기가 좋지 않은 상권을 지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과 중복가능성 존재, 차별화되는 지원방안 필요
- 제도운영 초기를 감안 밀집지역 유형 중 공간적 범위가 명확하고 밀집지역내 기업현황 파악이 용이한, 중소기업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추진
 - 현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보편적 지원제도인 ‘위기지역 Scale-Up R&D’사업이나, 평가가점 등의 지원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신청 등이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 중소기업들이 존재하는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중심 지정 필요
 - * 가급적 우대사항 등이 활용가능토록 50개 이상 기업을 포괄하는 밀집지역에 대한 지정이 필요

□ 선정지표의 적정성

- 현 선정지표의 경우 소상공인밀집지역을 식별하는데 한계가 존재
 - 필수지표인 매출액 변화를 제외하고 소상공인 현황을 반영하는 지표 부재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경우 1인 자영업자 등을 고려한다면, 소상공인의 경영현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쉽지 않음.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등 소상공인 경영현황을 나타내는 보조지표 활용 방안 고려 필요
- 밀집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선정지표 활용 가능성 제고 필요
 - 밀집지역 내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수, 밀집지역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같이 특정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지원지역의 대상이 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밀집지역 내 모든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출이 필요
 - 밀집지역 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출 관련 내용이 안내되어야 함.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경우 필수지표로 시군구 자료를 활용할 경우 해당 지표를 만족하지 않는 시군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점 발생
- 선택지표 기준 완화 필요
 - 선택지표의 경우 4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하면 되나, 이를 만족하기 쉽지 않음.
 - * 2020년 4분기 자료 기준,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만족 시군구는 250개 중 1개 이며, 공장등록현황은 249개 중 39개, 전락사용량은 229개 중 6개,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155개 중 23개만 해당됨.
 - * 아파트매매가격지수의 경우 대부분 군지역 정보가 없음. (82개 군지역 중 74개 정보 없음)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선택지표의 완화가 필요
 - * 선정기준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필수지표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이나 선택지표의 경우 가급적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 실질적인 기준은 밀집지역 내 기업 매출액 변화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지원지역에 포괄적 적용가능 조세지원제도 도입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등(이하: 위기지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됨.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별도 조항에 반영되어 있음.
 - 현재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해당 요건완화가 필요
 - 요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을 말함.
 - 따라서, 이 경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음.
 - 또한, 감면한도 규정이 존재 (추후 해당 규정 완화 필요성 검토 예정: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감면한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감면한도 규정은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감면하지 않는 조항이나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보여지므로, 명백히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본 조항에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 필요

□ 「고용보험법」 연계를 통한 고용관련 지원정책 추진

-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 지원) 제3항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관련 내용 포함 필요

□ 관련 법령 개선 필요 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조항 개선 필요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 법률의 명칭 변경 필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내부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 신청대상 밀집지역 명확화
 - 현 법령상 시행령에 제시된 밀집지역 이외에는 신청이 불가
 - 또한, 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지정 또는 인정된 지역 이외에 신청 불가로 설정 필요
 - 공업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신청 대상이 모두 공업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포함되어야 함.
 - 산업단지 중 일부를 신청하는 것도 불가 ([고시] 상 '단위 기준으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하며,')
- 시행령에 제시된 밀집지역 이외에 공업지역 등 다양한 범위의 밀집지역이 제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부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 매출액 증감을 결과에 대한 적정성확보를 위해 최소한 10개 이상 기업 포함 필요
 - 공업지역과 같이 특정된 밀집지역이 아닌 경우 가급적 읍면동 기준으로 구분이 필요
 - * 단일 읍면동 또는 복수 읍면동

□ 소상공인밀집지역 자료 확보 필요

-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실태조사를 제외한 소상공인밀집지역에 대한 현황 정보 수집 필요

- 1차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대상 및 기존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된 밀집지역 현황 정보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획득 필요
-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한 소상공인밀집지역 현황분석 및 지원제도 차별화 방안 확보 필요

□ 지원제도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확보된 지원제도의 경우 기존 산업위기특별지역과의 차별성이 높지 않음.
 - 보편적 지원정책 도입 추진과 더불어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및 추가적인 자금지원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

□ 법령 정비

- 정비가 필요한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 제시
 - 법제연구원 등과 협업을 통해 법령, 시행령 및 고시 개선안 제시
 - '자료요청'법적 근거 마련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제도 운영에 관한 평가 근거 마련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책임 강조 필요
 - 사전검토 절차 명문화 필요
 - 제출할 자료에 대한 명문화 (고시 별표) 필요